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09 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·강기윤·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요 재정사 업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 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8조 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	제8조의2(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
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	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
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	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유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
	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
	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
	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